

80年代의 韓國經濟와 中小企業 (下)



柳 騎 榮

企協, 中小企業新聞編輯局長

— 4 —

그러면 여기서 中小企業의 오늘의 當面 問題와 그 對策을 部門別로 알아보기로 한다.

▶ 資金面

財政資金, 金融資金, 國民投資基金 등의 자금공급이 모두 未洽한데다가 資本市場을 통한 長期資金의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거기다가 信用保證附 貸出도 不振한 상태에 있다. 또 施策資金과 一般資金의 金利差도 幅이 좁아 施策資金의 資金效果가 적으므로써 施策자금으로서의 意義가 적다.

먼저 財政資金의 支援실적을 볼 때 財政投資의 過少로 中小企業이 疎外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中小企業部門 財政投資는 4.4%에 不過하여 日本의 19.6%에 비하면 4분의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도 43.9%로서 日本의 56.7%를 훨씬 未達하고 있다. 더우기 國民投資基金은 80年度의 경우 2.8%로서 5,380億원에서 150億이며 信用保證附 貸出은 80年 12月 현재 總貸出額 37,052億원의 19.7%인 7,298億원이다.

더우기 施策과 一般資金의 金利는 79年度 3.5%, 81年度 1.5%의 差로 좁혀지고 있다. 韓國과 日本의 貸出金利 및 期間比較는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

- 一般資：20~21% 2~5年
- 特別資金中の 一般資金：19.5~20.5% 2~8年
- 特別低利자금：18~19% 2~8年
- 公害防止施設：18~19% ”
- 中小企業振興公庫：17% ”

◇ 일 본

- 中小企業金融公庫：9% 5~7年
 - 國民金融公庫：7.2~9.1% 3~7年
 - 高度化事業資金：2.7% 12~16年
 - 公害防止施設자금：無利子 13~16年
 - 中小企業振興事業團：2.7% 12~16年
- (資料：日本中小企業 白書)

《對 策》

81年度 中小企業部門 財政投資가 4.4%이나 이를 10% 以上으로 擴大하고 현재 市中銀行의 中小企業部門 貸出이 35%線이나 이를 50% 以

上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 國民投資 基金의 資金供給도 10% 以上으로 擴大해야 한다.

한편 中小企業施策 資金을 金融資金으로 利差補植하고 있으나 이를 財政資金화하는 同時에 金利를 15%線으로 引下해야 할 것으로 안다.

한편 中小企業을 전담하는 短資會社를 設立하고 信用保證基金을 中小企業으로 專担化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同時에 中小企業 投資育成株式會社를 빠른 時日內에 設立할 필요가 있다.

▶ 施設面

中小企業의 設備部門이 안고 있는 問題는 老朽化된 施設의 現代化이다. 中小企業 生産施設의 切半이 老朽化 되었고 改替補助金 지원이 中斷되고 있어 現代化가 지지부진 상태이다. 거기다가 新設備 投資가 매우 不振한 상태에 있다. 生産施設狀況을 보면 老朽가 16.6%, 舊式施設이 32.4%로서 改替가 시급한 施設이 50%에 가깝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우선 老朽施設 改替補助 資金을 復活해야 할 것이고 특히 公害防止施設에 대한 設置費를 補助해야 할 것이다.

▶ 輸出面

中小企業의 輸出問題는 거의가(약 80%) 間接輸出에 依存함으로써 不利한 條件下에 있고 海外市場 개척활동이 미약하며 輸出情報를 얻는 능력이 크게 不足한 상태이다. 또 중소기업은 貿易業 登錄要件이 制限되어 있어 資格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속에 있다.

中小企業의 輸出形態를 보면 直輸出은 20.3%에 不過하고 代行輸出이 21.9%, 內國信用狀에 의한 輸出이 35.0%, 單純下請이 22.8%이다.

한편 輸出을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는 海外情報의 어두움이 37.6%이며 輸入規制가 25.6%, 同業者끼리의 過當競爭이 15.4%, 品質과 디자인 등의 劣勢가 12.6%, 기타 8.8%이다. 무역업의 등록요건은 6개월간의 로컬L/C 수출실적이 25萬弗 以上이어야 하고 自己앞 L/C 受取가

30萬弗 以上이며 우리나라 貿易에 대한 支援行政이 서울에만 集中되어 있어 地方所在 業체는 어려움이 加重되고 로컬輸에 따른 關稅 還給이 不利한 立場에 있다. 還給期間이 半年 以上이나 所要되어 그렇지 않아도 資金面에서 취약점이 많은 中小業體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對 策》

內國信用狀 開設과 로컬L/C에 대한 關稅還給을 각각 義務化하고 制度化해야 한다. 또한 코트라는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市場 조사단 파견의 幅을 넓혀 주어야 하겠고 貿易業 登錄要件은 大幅的으로 완화하여 현재 25萬弗을 5萬弗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한편 中央集中으로 되어 있는 貿易行政도 大幅的으로 地方이양이 바람직하다.

▶ 製品販路面(購買制度化)

政府機關과 公共機關의 中小企業製品 購買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는 政府關係 部處와 政府投資機關을 비롯한 公共機關들이 中小企業을 相當量 購買해야 한다는 法的 뒷받침이 없어 이들 機關들이 中小企業製品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다. 따라서 印度 등과 같이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法을 制定하여 一定量의 中小企業製品을 購買하도록 義務化해야 한다. 이 問題는 이미 오래전부터 中小企業界가 同法의 制定을 要求하고 있으나 아직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웃 日本의 경우에는 이미 1966년에 中小企業者의 受注確保에 관한 法律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豫算會計法 施行令과 國務總理 訓令 및 指示가 있었을 뿐 制度化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므로 總購買額(調達廳)의 25% 團體隨意契約에 의한 購買는 13.6%에 不過한 購買實績을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50%線에 가까운 購買가 있어야 하겠다. 이같은 政府, 公共機關의 中小企業製品 購買는 정부가 자금지원 以上의 效果가 있는 것이며 支援施策에 있어서

의 直接支援에 못지않는 間接支援으로서의 意義와 效果가 크다는 점을 認識해야 할 것 같다.

한편 政府, 地方團體 및 公共機關의 自家生産 施設설치가 中小企業의 安定稼働을 위협하고 있는데 家具, 印刷, 시멘트加工業 分野에서 이것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自家生産이 調整되어야 하겠고 政府, 政府投資기관 등의 物資 調達이 中央에만 集中되어 地方所在 中小企業들의 納品機會가 거의 상실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먼저 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法을 早速히 制定할 것이며 政府, 地方自治團體 등은 團體의 隨意契約 指定 品目の 自家生産을 中止하고 公共機關의 團體隨意契約의 物量을 擴大할 것이며 地方調達が 可能한 品目은 當該地方의 現地調達로 充當하는 등 中小企業 製品의 購買를 擴大해야 할 것이다.

▶ 稅制面

中小企業에 대한 輕減法人稅率이 폐지됨으로서 所得全額 800만원 以下는 稅負擔이 높다. 또 重化學 中心의 差別稅制支援으로 중소기업이 不利하다. 또한 特別업종은 從業員 500人 以下이므로 稅法上의 中小企業 300人 以下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우기 정부시책에 의한 中小企業 優先業種에 대한 特別支援이 전연 없으며 公害防止施設은 非生産施設임에도 施設投資에 대한 支援이 미흡하다.

個人事業 法人전환시 양도소득세 減免조건이 不利하고 工場이전 때 양도소득세의 免稅條件도 不利하다. 또한 都市型 업종에 대한 地方稅가 重課되고 있으며 重要産業에 대한 個人事業 減免特例差 등으로 課稅衡平이 안되고 있는가 하면 中小企業 小規模 協同化團地에 대한 稅制支援도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對 策》

中小企業 輕減稅率을 新設하고 特例業種에 대한 稅制支援 대상을 追加해야 할 것이다. 즉 1,000만원 以下는 15%로 新設하고 5,000만원 以下는 25%, 5,000만원 초과는 33%로 公開企業과 같은 水準이 妥當하다. 中小企業 優先 업종에 대해서는 所得稅(法人稅) 3年間 全額을 면세하고 向後 2년간은 50%를 輕減하고 非合併 獎獎勵 업종은 合併 후 登錄稅, 取得稅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公害防止施設 投資에 대해서는 각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20% 범위내 3년간 준비금 積립을 制度化 하고 個人事業의 法人 전환시에는 新設 法人의 자본금을 個人事業者의 出資金과 同一한 水準으로 할 것이며 工場移轉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完善하고 個人事業者 減免特例 差等적용을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小規模 協同化團地에 대해서도 稅制支援策을 重要産業과 同一한 水準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中小企業 近代化문제, 支援行政 機構의 合理化, 協同組合 共同事業基金문제 등이 있으나 紙面關係로 省略한다.

— 5 —

오늘의 中小企業이 80年代의 새로운 經濟體質 속에서 살아남고 成長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展開될 經濟與件을 迅速히 그리고 바르게 認識하고 이것을 受容할 수 있는 經營者로서의 意識對備와 經營方式의 現代化가 切實히 요청되는 條件이라 하겠다.

